

변호사가 없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 주 변호사 등록번호: 이름: 법무법인 이름: 거리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변호사가 대리하는 당사자(이름):	<p>법원용</p> <p>정보 제공 전용</p> <p>법원에 제출하지</p> <p>마십시오</p>
캘리포니아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거리 주소: 우편 주소: 시 및 우편번호: 지원 이름:	
사건명: <p style="text-align: center;">정보 제공 전용</p>	
<p>제출 통지서</p>	사건 번호: <p style="text-align: center;">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p>

- 본 양식에 명시된 문서는 다음 중 해당 사항에 대한 입증 자료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a 또는 b 에 표시):
 - 친자관계 결정 신청서(대리모 계약)(양식 SUR-100).
 - 친자관계 결정 공동 신청서(대리모 계약)(양식 SUR-100(J)).
- 가족법 제 7962 조에 의거 제출해야 하는 문서:
 - 공증받은 대리모 계약(가족법 제 7962 조에서 “대리모를 위한 보조생식 계약”이라고도 함)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
 항목 2a 에 명시된 계약의 영문 번역본(자격을 갖춘 통역사가 선서 하에 인증함)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
 - 해당 대리모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의뢰 부모(들) 및 대리모(및 그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를 대리한 각각 독립된 자격 있는 변호사들의 진술서.
- 기타 문서(자세히 기재):
- 본인은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California Rules of Court) 제 5.96 조에 따라 다음을 이해합니다.
 - 당사자가 법원 서기에 의한 자료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법원 서기에 직접 제출하는 자료에는 해당 자료를 발송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금액의 우표가 부착된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하는 당사자가 우표가 부착된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지 않는 경우, 법원 서기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후, 해당 자료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통지한 다음 제출된 자료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서기에 전자적으로 제출된 자료에는 삭제 통지가 발송될 수 있는 전자적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후, 법원 서기는 자료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전자적 통지를 발송한 후, 전자적 형태로 제출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에 기술된 정보 및 모든 첨부서류가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진술하며, 이와 상위할 경우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합니다.

날짜: _____ 진술인의 이름을 타자 또는 정자로 기재	▶	정보 제공 전용 진술인 서명
날짜: _____ 진술인의 이름을 타자 또는 정자로 기재	▶	정보 제공 전용 진술인 서명
날짜: _____ 진술인의 이름을 타자 또는 정자로 기재	▶	정보 제공 전용 진술인 서명